國會法中改正法律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2003. 1. .
제 안 자: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2002.11.8)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정당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나. 2002년 11월11일, 11월12일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와 2003년 1월14일, 1월16일, 1월20일 간사회의 결과 허태열 위원, 천정배 위원, 이경재 위원, 임인배 위원, 김용학 위원, 김택기 위원, 김근태 위원, 송영길 위원의 서면동의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3.1.20)는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국회의 대정부 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결산심사기능을 강화하며, 또한 법률안이 연중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을 보완하며, 기타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6조의3제1항 단서).

나.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은 임시회의 경우 동일회기중에, 정기회의 경우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6항).

다. 위원회의 심도있는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후 15일(법사위는 5일)이 경과한 후에만 상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라. 대통령이 요청한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

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2항).

마.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의안발의 요건을 완화함(안 제79조제1항).

바. 국회 결산심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후단).

사.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해서는 소관상임위원회가 72시간 이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84조제5항).

아.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

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의2제2항).

자.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4조제2항)

차. 대정부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두(冒頭)질문은 폐지하고,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20분간 하도록 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안 제122조의2).

카.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은 3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이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7조의2 신설).

타. 국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결산(기금결산 포함)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고,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도록 함(안 제128조의2, 부칙 제1조 단서).

법률 제 호

國會法中改正法律案

國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중 “任期滿了日 5日전에”를 “임기만료일전 5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중 “國會의”를 “국회는”으로 한다.

제17조중 “多數의 得票者”를 “다수득표자”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장은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소관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水産業協同組合·畜産業協同組合”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중 “敎育部所管”을 “교육인적자원부소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豫算案과 決算”을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으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제4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본문중 “5日”을 “15일”로, “3日”을 “5일”로 하고, 동조 단서중 “특별한”을 “긴급하고 불가피한”으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중 “審査를”을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제79조제1항중 “20人”을 “10인”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존중한다.”를 “존중하여야 하며,”로, “所管常任委員會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기회 기간중에 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제2항중 “演說”을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제112조제7항중 “發議된 때에는”을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로 한다.

제1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12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의제별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2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항중 “質問을 하고자 하는 議員은 미리 冒頭質問의 要旨와 所要時間을 기재한 質問要旨書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를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로 하며, 동조제7항 전단중 “그 質問配定時間 및 質問順序”를 “질문순서”로 한다.

④의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의제별 질문의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결산의 제출요구 등) ①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②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30조제1항중 “즉시”를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중 “행사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國家情報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大統領이 任命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② 國家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檢察廳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檢事의 任命 및 補職)”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警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 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第5條(臨時會) ①·② (생 략) ③國會議員總選擧후 최초의 臨時會는 議員의 任期開始후 7日에 集會하며, 처음 選出된 議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가 閉會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任期滿了日 5日전에 集會한다. 그러나, 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集會한다.	第5條(臨時會)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任기만료일전 5일까지-------- ---------- ----------
第8條(休會) ① (생 략) ②國會의 休會중이라도 大統領의 요구가 있을 때, 議長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會議를 再開한다.	第8條(休會) ① (현행과 같음) ②국회는 ---------- ---------- ---------- ---------- ---------- ---------- -----
第17條(臨時議長의 選擧) 臨時議長은 無記名投票로 選擧하되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多數의 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第17條(臨時議長의 選擧) ------ ---------- ---------- ------다수득표자--------- --------
第23條(國會의 經費) ① (생 략) ②議長은 國會運營委員會에서 정한 國會所管豫算要求書作成	第23條(國會의 經費)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基準에 따라 國會所管豫算要求書를 작성하여 國會運營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政府에 제출한다. 議長이 國會所管豫算要求書를 작성할 때에는 所屬機關의 長(委員會 委員長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소관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29條(兼職) ① 議員은 政治活動 또는 兼職을 금지하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제외한 다른 職을 겸할 수 있다.	第29條(兼職)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農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畜産業協同組合의 任·職員	5. ----------수산업협동조합----------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37條(常任委員會와 그 所管) ① 常任委員會와 그 所管은 다음과 같다.	第37條(常任委員會와 그 所管)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敎育委員會 敎育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8. --------- 교육인적자원부소관------
9. ~ 17. (생 략)	9.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45條(豫算決算特別委員會) ① 豫算案과 決算을 審査하기 위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둔다. ② ~ ⑥ (생 략)	第45條(豫算決算特別委員會) ①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46條의3(人事聽聞特別委員會) ①國會는 憲法에 의하여 그 任命에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大法院長·憲法裁判所長·國務總理·監査院長 및 大法官과 國會에서 選出하는 憲法裁判所 裁判官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에 대한 任命同意案 또는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제출한 選出案등을 審査하기 위하여 人事聽聞特別委員會를 둔다. <단서 신설>	第46條의3(人事聽聞特別委員會) ① ---------- ---------- ---------- ---------- ---------- ---------- ---------- ---------- ---------- ---------- ----------. 다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48條(委員의 選任 및 改選) ① ~ ⑤ (생 략) <신 설>	第48條(委員의 選任 및 改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第59條(法律案의 上程時期) 委員會는 發議 또는 제출된 法律案이 그 委員會에 회부된 후 5日(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字句審査의 경우에는 3日)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議事日程으로 上程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9條(法律案의 上程時期) ---------- ----------15일 ---------- ----------5일---------- ---------- ----------긴급하고 불가피한---------- ----------.
第65條의2(人事聽聞會) ①第46條의3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人事에 관한 聽聞會(이하 "人事聽聞會"라 한다)를 연다.	第65條의2(人事聽聞會) ①----------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
<신 설>	②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第79條(議案의 發議 또는 제출) ①議員은 20人이상의 贊成으로 議案을 發議할 수 있다. ②~④(생략)	第79條(議案의 發議 또는 제출) ①------10인---------- ----------.
第84條(豫算案·決算의 회부 및 審査) ① (생 략)	第84條(豫算案·決算의 회부 및 審査) ① (현행과 같음)
②議長은 豫算案과 決算에 第1項의 報告書를 첨부하여 이를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그 審査가 끝난 후 本會議에 附議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④ (생 략)	③ ·④ (현행과 같음)

⑤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所管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査內容을 존중한다. 所管常任委員會에서 삭감한 歲出豫算 各項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所管常任委員會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존중하여야 하며,----------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常任委員會는 所管部處에 대한 決算豫備審査를 國政監査실시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⑦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第93條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① (생 략)	第93條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정기회 기간중에 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4條(發言原則) ① (생 략) ②交涉團體를 가진 政黨을 代表하는 議員이나 交涉團體의 代表議員이 政黨 또는 交涉團體를 代表하여 演說 기타 發言을 할 때에는 40分까지 發言할수 있다. <후단 신설>	第104條(發言原則) ① (현행과 같음) ②----------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112條(表決方法) ① ~ ⑥ (생 략) ⑦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建議案이 發議된 때에는 本會議에 보고된 때로부터 24時間이후 72時間이내에 無記名投票로 表決한다. 이 期間내에 表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選任建議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第112條(表決方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第117條(字句의 訂正과 異義의 決定) ①·② (생 략) <신 설>	第117條(字句의 訂正과 異義의 決定) ①·② (현행과 같음) ③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第122條의2(政府에 대한 質問) ①(생략)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현행과 같음)
②對政府質問은 冒頭質問을 마친 후 一問一答에 의한 補充質問을 하는 방식으로 하되, 議員의 冒頭質問과 一問一答에 의한 補充質問時間은 각각 15分을 초과할 수 없다. 一問一答에 의한 補充質問時間의 경우에는 答辯을 포함한다.	②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議題別 議員의 冒頭質問과 一問一答에 의한 補充質問에 소요되는 總時間은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정한다.	③의제별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議長은 第3項에서 規定한 總質問時間을 交涉團體別로 그 所屬議員數의 比率에 따라 配定하며, 각 交涉團體는 配定된 質問時間의 범위안에서 質問者數와 質問者別 質問時間을 정한다. 이 경우 交涉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議員의 質問者數와 質問時間은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정한다.	④의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의제별 질문의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생략)	⑤(현행과 같음)
⑥質問을 하고자 하는 議員은 미리 冒頭質問의 要旨와 所要時間을 기재한 質問要旨書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議長은 늦어도 質問時間 48時間전까지 質問要旨書가 政府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

⑦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은 質問議員과 그 質問配定時間 및 質問順序를 質問日前日까지 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의 통지내용에 따라 質問順序를 정한 후 이를 本會議開議전에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政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질문순서----------.
<신 설>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28조의2(결산의 제출요구 등) ①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②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第130條(彈劾訴追의 發議) ①彈劾訴追의 發議가 있은 때에는 議長은 즉시 本會議에 보고하고, 本會議는 議決로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第130條(彈劾訴追의 發議) ①----------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②·③ (현행과 같음)
第136條(退職) ①議員이 겸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하거나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開始日이후에 解職된 職의 權限을 행사한 때에는 議員의 職에서 退職된다. ②·③ (생 략)	第136條(退職) ①----------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②·③ (현행과 같음)